FTA BRIEF

중국 수출허가 관리 강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

Vol. 03
MAY 2026

한국원산지정보원

비전 : 원산지 정보로부터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FTA·원산지전문기관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활용연구
FTA 활용률 통계 산출
FTA 관세율 정보 제공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연구
FTA 협상 지원
FTA 정책 지원정보
원산지 규정 분석 및 해석

신통상규제 연구
수출입 규제 수집 분석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국제통상 정책 동향 수집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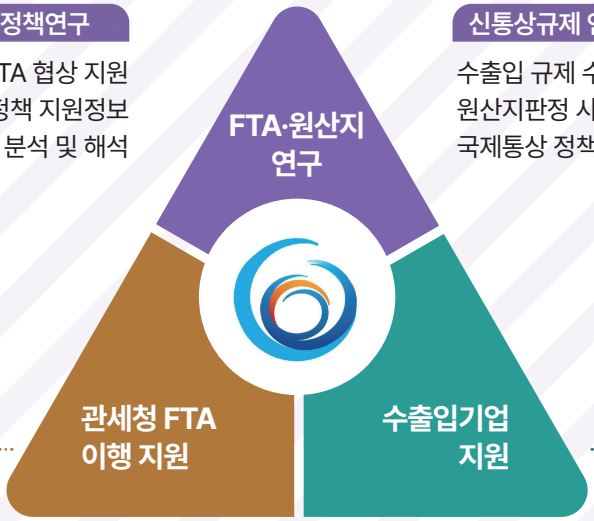

원산지검증 지원
국내·외 품목·산업 동향 수집 분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인증수출자 인증 예비조사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FTA 전문인력 양성
FTA 활용 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전문자격제도 운영 및 도서발간

발행인 김일권
발행처 한국원산지정보원
발행일 2026년 5월27일
주 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전화 031-600-0769
홈페이지 www.origin.or.kr
ISSN 3022-7984

Copyright ©2026 by Korea Insitute of Origin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원산지정보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FTA 원산지 동향 ISSUE

※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UAE CEPA 발효(2026.05.01. 발효)

☑ 2026년 5월 1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며 양국 간 교역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

-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자동차·가전·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와 디지털무역 규범 도입 등이 포함됐다.

☑ 양국은 품목수 기준 한국 92.5%, UAE 91.2% 개방하며, UAE에 대한 관세 철폐 대상 주요 품목은 자동차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외에도 화장품과 의약품, 의료기기와 라면, 조미김 같은 K-푸드 등이 있다.

<관세철폐 대상 주요 품목>

관세 인하	주요 내용	의의 및 기대효과
주력 수출품목	자동차(전품목) 5% ⟩ 철폐(즉시~10년)	빠르게 성장하는 UAE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
	가전(에어컨·냉장고·세탁기) 5% ⟩ 철폐(10년)	사막 기후에 필요한 가전 수출 확대
수출 유망품목	화장품 5% ⟩ 철폐(즉시~10년)	K-뷰티 인기 상승에 따른 시장 진출 가속화
	무기류 5% ⟩ 철폐(즉시~5년)	중동국 무기 수요 상승에 따른 K-방산 수출 가속화
	의약품·의료기기 5% ⟩ 철폐(즉시~10년)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과 연계한 시장 진출
	라면 ⟩ 철폐(10년) / 조미김 ⟩ 철폐(5년)	K-콘텐츠 확산에 따른 K-푸드 수출 증가

※ 출처 : 산업부 발표자료

☑ 원산지 규정의 경우, 공산품·석유화학제품은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부가가치기준(QVC 40%) 등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선택 적용하는 반면, 농축수산물은 대체로 민감성을 반영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한다*.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세사 등 전문가 자문을 활용 필요

☑ 원산지 증명은 기관발급·자율발급 병행되며, 선적 후 5 근무일 이내 신청 및 1년 내 소급발급 가능하며 제3자 송장 및 재발급의 경우 유형별 필수 문구 기재가 필요하다

구분	주요 내용
원산지 증명 방식	기관발급 + 자율발급 병행
발급 기관	한국: 세관·상공회의소 / UAE: 대외무역부
발급 시점	선적 전·시 또는 선적 후 5근무일 이내
소급발급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
제3자 송장	'제3자 송장' 명시 및 발행자 정보 기재 필수
정정/재발급 문구	• 소급: ISSUED RETROACTIVELY • 재발급: CERTIFIED TRUE COPY • 정정: Replacement

중국 수출허가 관리 강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

[글_**김민준**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는 특정 품목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수출허가를 통해 거래 상대방과 최종용도를 심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군수품이나 무기화가 가능한 품목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갈륨·게르마늄·흑연·희토류 등 첨단산업 공급망과 연결된 품목과 희토류 관련 기술·장비 등의 영역으로까지 허가 관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제조 장비 등 중국의 기술 굴기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은 공급 우위를 가진 핵심 광물과 원재료를 중심으로 수출허가 관리를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광물과 소재를 활용해 대외 협상력을 높이고, 민감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중용도 허가 품목의 경우 해외 수입자와 최종사용자의 신원 및 용도를 확인하고 증빙서류(EUC[1])를 제출해야 하는 등, 특정 물자의 이동 경로와 사용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수출허가 제도를 통해 중국의 실질적 통제력이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국산 원재료(품목)와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 중국의 수출허가 관리 강화는 중요한 통상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기계, 전자 등 주요 제조업은 중국산 원재료(품목)와 중간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허가 관리가 강화될 경우 납기 지연, 계약 불이행, 공급 차질, 재고 부담 확대 등 다양한 위험(리스크)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통제 대상 품목 확대 여부뿐 아니라 수출허가 절차, 제출 서류, 최종사용자 확인, 계약상 책임 배분 등의 위험(리스크)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최종사용자·용도 확인서(EUC, End-User Certificate)는 전략물자, 방산물자, 관련 기술 등 국제 거래 시,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실제 사용처와 용도를 명시하여 제3자 이전 금지를 서약하는 국제 통용 문서

2. 수출허가제도 개요

중국의 수출허가 제도는 특정 품목을 해외로 수출하기 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국 현지 수출기업은 품목의 성격과 관리 유형에 따라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하고, 상무부와 해관총서 등 기관은 허가 내용과 실제 수출물품을 대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수출허가의 대상은 일반 허가 품목, 이중용도 허가 품목·기술로 구분되며, 허가 신청 품목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적용 법령과 관리 방식이 구분된다.

수출허가제도 개요

구분	내용	비고/출처
신청주체	중국 내 수출 자격을 갖춘 기업[2]	해외 수입자 신청 불가 상품 수출허가 관리 규정(상무부, 2019)
주관부서	상무부(산업 안전 수출입 관제국), 해관총서	-
법적근거	「대외무역법」, 「수출통제법[3]」 등	-
심사핵심 (이중용도)	1. 물품의 용도[4] : 민간용(Civil Use) 또는 군사용 전용 가능 여부 2. 최종 목적국[5] : 미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 여부(Non Re-export)	이중용도 품목·기술 수출입 허가관리 목록 (상무부·해관총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국무원)

※ 출처 :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관련 공고, 저자 재구성

수출허가 제도는 단일 법률이 아닌 목적과 대상에 따라 이원화[6]된 구조로 운영된다. 일반 허가 품목은 「대외무역법」을 기반으로 「수출입허가관리목록」, 「기술수출입관리조례」 등을 통해 관리되며,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허가 품목은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조례[7]」에 따라 별도로 관리된다. 중국은 이러한 이원화 구조를 통해 일반 허가 품목과 이중용도 허가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허가제도 관련 법령

구분	대외무역법	수출통제법
대상	일반 허가 품목	이중용도 허가 품목, 군사용 품목
관련 규정	수출·수입 허가관리 조례 희토류 관리 조례 기술 수출·수입 관리 조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군수품 수출통제 조례
대상	수출허가 관리 목록(희토류 67종 포함) 기술 수출금지 및 제한 목록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군수품 수출통제 목록
목적	국가안보 및 공급 관리	대량 살상무기(WMD)의 비확산

※ 출처 :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관련 공고, 저자 재구성

수출허가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수출 승인 여부 판단에 있지 않고, 국가안보, 산업정책, 공급망 안정, 대량 살상무기(WMD[8]) 비확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허가 품목의 경우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의 확인이 중요하게 다뤄지며, 동일 품목이라도 군수 기업과 연관되거나 민감 산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허가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

2) 《货物出口许可证管理办法》,商务部, 2019年 第1号, 2019.11.30.
3) "2025년 중국 이중용도 수출입 허가 목록 관련 분석",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5-23호, 무역안보관리원
4) 《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目录》, 2024年 第67号, 2024.12.31.
5) 《中华人民共和国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 国务院, 2024年 第792号, 2024.09.30.
6) MERICS, Keeping value chains at home, 2024.08.08(검색일 : 2026.03.24)
7) 2026年度《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目录》, 商务部·海关总署, 2025年 第91号, 2025.12.31.
8) 대량 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부피나 용량에 비하여 인간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핵무기와 화생방 무기 등을 지칭, 국가기록원

3. 허가관리 강화 동향

3-1. 관리 품목의 확대

중국은 최근 핵심광물과 전략자원을 중심으로 수출허가 관리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대표적으로 2023년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가 관리를 도입한 이후, 흑연, 안티모니, 텅스텐, 인듐, 희토류 등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티모니와 텅스텐 등 품목은 일반 허가 품목에서 이중용도 허가 품목으로 편입되어 심사가 강화되었고, 비(非) 통제 대상으로 일반적인 무역이 가능했던 흑연과 텔루륨 등은 이중용도 허가 품목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일부 이중용도 허가 품목의 경우 특정국(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되거나, 최종사용자·용도 확인서(EUC) 제출 요구와 같은 심사 요건이 강화되었고, 일부 희토류의 경우 역외적용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고강도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허가 관리 품목 확대 사례[9] [예시]

구분		일반 → 이중용도	비(非) 통제 → 이중용도	이중용도 → 고강도 통제**
갈륨, 게르마늄		O		특정국 대상 수출금지
흑연			O	수출허가 엄격 심사
안티모니		O		
텅스텐		O		
텔루륨			O	
비스무트		O		
몰리브덴		O		
인듐		O		
희토류	사마륨	O		역외적용*[10]
	가돌리늄	O		역외적용
	테르븀	O		역외적용
	디스프로슘	O		역외적용
	루테튬	O		역외적용
	스칸듐	O		역외적용
	이트륨	O		역외적용
	홀뮴	O		
	어븀	O		
	툴륨	O		
	유로퓸	O		
	이터븀	O		
배터리 양극재 기술		O		
희토류 관련 기술		O		역외적용

❋ 출처 : 무역안보관리원,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2025)

* 역외적용 : 해외 조직 및 개인이 중국산 통제 대상 물품이 포함된 해외 제조 제품을 중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2026년 11월 시행 예정)

** 고강도 통제 : 허가 심사 강화를 의미하고, 특정국(미국)에 대한 수출금지 및 고순도 흑연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역외적용 등과 같은 고강도 수출통제를 의미

9)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무역안보관리원 2025.12.

10) 《公布对境外相关稀土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商务部, 2025年 第61号, 2025.10.09.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광섬유, 적외선 장비 등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이며,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모터, 풍력발전, 방위산업, 전자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즉, 중국이 수출허가를 통해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품목들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첨단 제조업의 기초 투입 자재로 볼 수 있다.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경우 과거에는 군수산업이나 원자력 또는 특정 첨단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이 통제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배터리,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우주항공 등 민간 첨단산업과 관련된 품목까지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수출허가 관리 품목의 단계별 확대 사례

구분	명칭	용도
2023[11]	갈륨 (Gallium)	반도체 웨이퍼(GaAs, GaN), 집적회로, 광전자 소자(LED, 레이저 다이오드, 광검출기), 태양전지
	게르마늄 (Germanium)	광섬유 통신, 적외선 광학장비, 태양광용 소재, PET 플라스틱 촉매
2024[12]	안티모니 (Antimony)	난연제, 합금, 세라믹·유리·안료, 반도체 부품, 배터리 기술, 의약·화학
	초경질 재료	절삭공구, 내마모 공구, 정밀가공, 첨단 제조장비
2025[13]	텅스텐 (Tungsten)	초경합금, 절삭·내마모 부품, 특수강, 전자·전기 부품, 방위산업
	텔루륨 (Tellurium)	박막 태양전지(CdTe), 열전소자 등
	비스무트 (Bismuth)	무연 대체 합금, 세라믹 유약, 안료, 의약품
	몰리브덴 (Molybdenum)	강철·주철·초합금, 촉매, 윤활제, 에너지·화학 설비
	인듐 (Indium)	광통신, 광전자 부품, 고속 반도체, 디스플레이

* 출처 : 2023년 :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실시 공고, 상무부·해관총서
2024년 : 안티모니 등 물품의 수출통제 실시 공고, 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결정, 상무부·해관총서

특히 한국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디스플레이, 방위산업, 기계 등 많은 산업에서 중국산 핵심광물과 중간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허가 대상 품목이 늘어날수록 중국 공급업체의 허가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한국 기업의 조달 일정과 가격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품목 범위가 확대될수록 기업이 관리해야 할 정보도 많아진다. 단순히 원재료 명칭만 확인하는 것에서, 물품의 품목분류(HS 코드), 화학물질 고유식별번호(CAS 번호), 성분 함량, 가공 수준, 용도, 적용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동일한 광물이라도 순도, 화합물 형태, 가공 단계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 《关于对镓、锗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公告》,商务部·海关总署, 2023年 第23号, 2023.07.03
12) 《关于对锑等物项实施出口管制的公告》,商务部·海关总署, 2024年 第33号, 2024.08.15.
13) 《公布对钨、碲、铋、钼、铟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商务部·海关总署, 2025年 第10号, 2025.02.04.

결국 품목 범위의 확대는 중국의 수출허가 관리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국 기업은 자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원재료와 중간재를 식별하고, 해당 품목이 중국의 수출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3-2. 관리 영역의 확장(시행 예정)

중국 수출허가 관리 강화의 또 다른 특징은 관리의 영역이 원재료(품목)에서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가공 공정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점이다. 과거의 특정 원재료(품목)에 대한 형식적인 수출허가가 아닌, 원재료(품목) 확보 단계부터 중간재 생산 및 최종재 제조에 이르는 산업 전반으로 관리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희토류 분야이다.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과 정제뿐 아니라 분리, 제련 등 가공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와 기술, 공정 노하우까지 수출허가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에서 보유한 우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핵심 전략자원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2026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희토류 관련 수출허가 관리 조치를 통해 관리 영역의 확장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조치에는 중희토류[14]뿐 아니라 희토류 가공 장비와 원·부자재, 희토류 관련 기술, 리튬배터리와 인조흑연, 초경질 소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의 수출허가 관리가 자원 자체에서 장비·기술·응용 제품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허가 관리 영역의 확장(2026년 11월 시행 예정)

	구분	내용	출처
1	초경질 소재 품목 수출통제[15]	• 첨단 제조 산업 소재 통제 강화 – 인조 다이아몬드 관련 물품(장식·보석용 제외)	상무부, 해관총서
2	특정 희토류 장비·원자재 수출통제[16]	• 자원 통제에서 기술 통제로 확대 – 원심 추출 장비 등 희토류 가공 설비	상무부, 해관총서
3	특정 중희토류* 수출통제[17]	• 전략자원 통제 강화 – 홀뮴, 에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 등 물품	상무부, 해관총서
4	리튬배터리·인조 흑연 수출통제[18]	• 신 에너지 산업 통제 강화(원료·기술) – 고밀도 리튬배터리 제조 설비, 인조 흑연 및 전구체	상무부, 해관총서
5	희토류 역외 생산품 수출통제[19]	• 역외관할 개념 도입 – 자국 수출통제 물품이 사용된 해외 생산품까지 적용	상무부
6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통제[20]	• 희토류 관련 채굴, 제련·분리, 희토류 2차 활용 – 설계도면, 공정규범,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	상무부

※ 출처 :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저자 재구성

* 중희토류(HREE, Heavy Rare Earth Elements) : 원자의 중량이 무거운 희토류 원소로 경희토류보다 매장량이 적고 가격이 비싸며 고성능 자석, 방위산업 등 첨단기술 제품에 필수적인 원소

14) 중희토류와 중·중희토류는 원자번호와 전자배치를 기준으로 희토류 원소를 분류하는 개념
– 중국 상무부 공고 상의 중·중희토류는 중희토류 내에서 원자량이나 특성에 따라 중(中)희토류와 중(重)희토류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
15) 《公布对超硬材料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 商务部·海关总署, 2025年 第55号, 2025.10.09.
16) 《公布对部分稀土设备和原辅料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 商务部·海关总署, 2025年 第56号, 2025.10.09.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지 않더라도, 중국산 소재가 포함된 중간재를 제3국에서 조달하거나 중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터리 소재, 전자부품, 금속 가공품, 화학소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산 원재료 또는 중국 기술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시행 가능성을 고려해 공급망 내 사용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3. 철강 허가관리 시행

중국은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허가 관리 재시행을 공표[21] 하였다. 2007~2008년 수출허가 관리 대상이었던 철강 제품은 2009년 이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22]된 「대외무역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 관리 대상으로 재지정되었다.

허가 관리 대상은 중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 총 300개 품목[23]으로 제72류 224개 품목과 제73류 76개 품목이 지정되었다. 산업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는 합금강·비합금강 반제품, 열간압연·냉간압연 코일 및 강판, 도금강판, 컬러강판, 후판류 제품 등이 허가를 통해 수출되는 것이다. 철강 제품은 규격, 가공 수준, 용도에 따라 품목 분류가 다양해지는 특성이 있어, 한국 기업은 구체적인 품목명과 한국과 중국의 품목 분류를 대조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이 허가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수출허가 관리가 핵심광물, 희토류, 이중용도 품목, 첨단기술 관련 소재를 넘어 범용 산업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에너지, 가전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 소재이므로, 철강 수출허가 관리 재지정은 단순한 통관 관리를 넘어, 산업 전반을 관리하고자 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철강 수출허가 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 내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수출기업은 계약서, 품질검사 합격증, 제품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수입기업은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추가 자료 제공을 요청받거나, 허가 발급 일정에 따라 납기 조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철강 허가 관리 시행 초기에는 서류 보완, 심사 지연, 통관 혼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산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허가 대상 여부부터 공급업체의 허가 준비 상황, 계약상 납기 조정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7) 《公布对部分中重稀土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 商务部·海关总署, 2025年 第57号, 2025.10.09.
18) 《公布对锂电池和人造石墨负极材料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商务部·海关总署, 2025年 第58号, 2025.10.09.
19) 《公布对境外相关稀土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商务部, 2025年 第61号, 2025.10.09.
20) 《公布对稀土相关技术实施出口管制的决定》,商务部, 2025年 第62号, 2025.10.09.
21) 《公布对部分钢铁产品实施出口许可证管理》,商务部·海关总署, 2025年 第79号, 2025.12.09.
22)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12.27
23) 철강 제품 수출허가관리 시행 공고의 부록 《纳入出口许可证管理的部分钢铁产品目录》

4. 허가 절차 및 유의 사항

4-1. 일반 허가와 이중용도 허가

중국의 수출허가 관리는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수출허가증」 체계와 이중용도 품목·기술에 적용되는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허가증」 체계로 구분된다. 일반 허가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이중용도 허가는 「수출통제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된다.

일반 허가와 이중용도 허가가 동시에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중용도 허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한 뒤 수출이 이루어진다. 즉, 동일한 거래라도 품목이 이중용도 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일반 허가가 아닌 이중용도 허가가 적용된다.

일반 허가와 이중용도 허가 비교

구분	일반 수출허가	이중용도 수출허가
목적	수출·수입 현황 관찰(모니터링)	국가안보, 대량 살상 무기의 비확산
대상	일반 허가 품목	이중용도 허가 품목(군사용 전용 가능)
주관	상무부 또는 상무부 위탁 지방 기관	상무부 및 관련 주관 부문
기본 절차	① 연도별 수출허가 목록 해당 여부 확인 ② 쿼터·승인 등 사전 요건 확인 ③ 신청서·계약서 등 제출 ④ 수출허가증 발급 ⑤ 세관 제출 후 통관	① 이중용도 통제 대상 여부 확인 ② 관련 주관 부문 비준·허가 문서 확보 ③ 계약서·영업허가증 등 제출 ④ 이중용도 허가증 발급 ⑤ 세관 제출 후 통관
제출 서류	신청서, 수출계약서, 사업허가증 등 기타 쿼터문서·입찰문서·위탁대리협의서·가공무역 승인서류 등	신청서, 수출계약서, 사업허가증, 기술사양서, 최종사용자 증빙서류 등 기타 상무부 요구자료
심사/발급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
유효기간	통상 6개월	품목 및 계약별 상이
통관	세관에 제출 후, 통관	세관에 제출 후, 통관

*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관련 공고, 저자 재구성

1) 상무부는 수출허가 심사에 있어 필요에 따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수출업체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2)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소요 기간은 심사기간에 불포함 [24]

일반 허가와 이중용도 허가는 적용 대상, 절차, 심사 기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 허가는 연도별 수출허가 관리화물목록[25]에 포함된 일반 수출관리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이중용도 허가는 이중용도 통제 목록 또는 임시 통제 대상 물품·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용도 허가의 경우 상무부의 필요에 따라 전문가 의견 수렴이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서류 제출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허가 소요 기간은 일반 허가보다 길어질 가능성[26] 이 높다.

24)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의 핵심광물 5개 수출통제 조치, 2025.02.12..
25) 《出口许可证管理货物目录2024年》的公告, 商务部·海关总署, 2023年 第65号, 2023.12.29.
26) KITA Legal Report, 우리 기업을 위한 중국 수출허가제 해석,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2025.12.30.

4-2. 유의 사항

수출허가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의 신청, 관계기관 심사, 허가증 발급, 세관 통관의 순서로 진행된다. 현지 수출자는 수출 물품의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무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 허가 품목의 수출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자료에는 수출계약서, 신청서, 제품 설명자료, 품질검사 자료 등이 있고, 이중용도 품목·기술과 같이 민감 품목의 경우 최종사용자·용도 확인서(EUC)와 재수출 금지 또는 제한 관련 확약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품목의 성격에 따라 기술사양서, 성분표, 생산공정 설명자료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해당 품목이 관리목록에 포함되는지, 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 용도가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제3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27]이거나 우려거래자[28] 명단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검토될 수 있다.

수출허가 절차에 따른 예상 공급망 위험

구분		설명	공급망 위험
1	사전 준비	계약 체결, 최종사용자·용도 증명서(EUC) 및 기술자료 준비	• 최종사용자·용도 검증 부담 증가 • 공급망 정보·고객사 정보 노출 위험
2	허가 신청	수출자·물품·기술 정보 입력	• 원산지·성분·기술 포함 여부에 따른 수출 제한
3	서류 심사	용도·재수출 여부 검토	• 허가 반려 또는 조건부 승인 • 미·중 규제의 동시 적용 가능성
4	추가 심사	관계부처 협의 및 심층 검토	• 허가 지연에 따른 납기 차질 • 생산 일정 불확실성 증가
5	허가 발급	물량·기간 조건 확정	• 물량 제한 및 분할 수출로 인한 공급 차질
6	수출 통관	세관 검수 및 반출	• 규격 검수에 따른 통관 지연·압류 등 통관 애로

※ 출처 : 한국무역협회, Legal Report, 우리 기업을 위한 중국 수출허가제 해석(2025.12.30.)

한국 수입기업은 허가 신청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국 공급업체가 허가 신청을 위해 한국 기업에 최종사용자 정보, 제품 사용 목적, 납품처 정보, 재수출 여부 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한국 기업이 관련 정보를 늦게 제공하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하면 허가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최종사용자 확인서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핵심 서류다. 최종사용자 확인서에는 물품의 실제 사용처, 사용 목적, 제3자 이전 여부, 군사적 용도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계약상 의무나 규제 준수 책임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27) 제재 대상 :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28조와 제29조에 근거한 수출금지 대상
28) 우려거래자 :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제26조에 근거한 최종사용자와 용도가 불분명한 대상

또한 품목 분류 오류도 중요한 위험(리스크)이다. 중국의 허가 대상 여부는 품목분류, 품목명, 성분, 가공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업체가 제시한 품목 분류와 한국 기업이 인식하는 품목 분류가 다를 경우,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측 품목분류와 한국 수입 품목분류를 비교하고, 필요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

중국의 수출허가 관리는 특정 전략물자에 한정된 통제를 넘어, 공급망 전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허가 관리 체계는 일반 허가 품목과 이중용도 허가 품목으로 구분되며, 이중용도 허가 품목의 경우 과거에는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원재료(품목)와 중간재, 관련 기술과 장비까지 관리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철강과 같이 범용 산업재까지 관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요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직접 원재료(품목)와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국에서 조달하는 물품에 중국산 원재료(품목)가 사용되었거나, 중국산 기술·장비가 적용되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시행 예정인 일부 희토류 관련 강화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더라도 중국의 관리 대상 물품이나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 중국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공급망을 단순히 1차 공급업체를 기준으로 관리하기보다, 원재료(품목)의 출처부터 중간재의 구성, 적용 기술과 생산공정 및 최종재의 사용처까지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수출허가 관리의 강화 조치에 따라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경우 한국 기업의 생산계획과 공급망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요 품목별로 중국산 원재료(품목) 또는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를 확인하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과정에서 특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재명세서(BOM) 단위의 원산지관리를 수행해 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중국 수출허가관리제도 대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원재료 단계부터 최종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국산 원재료(품목)·중간재·기술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수출허가 제도로 인한 공급망 위험(리스크)를 관리하는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